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용 중 분묘 설치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분묘의 설치기간(안 제7조)

- 제7조제1항 중 “15년”을 “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5년씩 3회”를 “30년 1회”로 한다.

나. 사용료 등(안 제16조)

- 분묘의 설치기간 15년씩 3회를 30년 1회 개정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료를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자 함(별표 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7.8.11. ~ 2017.8.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[기획감사실-9435(2017.8.8.)]
- 3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5년”을 “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5년씩 3회”를 “30년 1회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장사시설의 사용료 등(제16조제1항관련)

평창군공설묘지(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-36)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계	사용료	관리비
분 묘 (매장)	단장 (6.75㎡)	2,000,000	1,520,000	480,000
	합장 (9.9㎡)	3,000,000	2,280,000	720,000
봉안시설	봉안담 1구당	400,000	400,000	-
	봉안당 1구당	600,000	600,000	-

※ 사용년한 : 30년 사용기준임.

읍·면(마을) 공동묘지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계	사 용 료	관 리 비
분 묘 (매장)	단장 (6.75㎡)	4,000	4,000	
	합장 (9.9㎡)	6,000	6,000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분묘의 설치기간) ①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설치기간은 <u>15년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<u>15년</u>씩 <u>3회</u>에 한하여 가능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7조(분묘의 설치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<u>30년</u>-----.</p> <p>② ----- <u>30년</u> <u>1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장사등에 관한 법률

제19조(분묘의 설치기간)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·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(제3조제5항 중 제1호 등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309